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국내 피해 전망 등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81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국내 피해 전망 등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1.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국내 피해 전망 등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안 제6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내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생략)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내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u> (생략)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나. 검토의견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와 같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수입 검역절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 등을 위해 식물 검역·방역 절차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내 피해전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식물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식물 검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절차적·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① 동법 제2조에 따른 병해충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병해충위험평가(PRA)¹⁾와 ② 동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정된 수입 금지식물에 대하여 특정 수출국이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IRA)²⁾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1) Pest Risk Analysis

2) Import Risk Analysis

그런데, 최근 3년간의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건이 넘는 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각각의 모든 병해충위험분석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경우 물리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병해충위험분석 최근 3년 실시 현황 】

연번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의 지정(PRA)	24건(812종)	22건(198종)	22건(152종)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평가(PRA)	32건(1,841종)	61건(336종)	34건(1,791종)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지식물의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분석(IRA)	35건	36건	44건
④	법 제11조(수입제한)에 따른 수입제한 관련 위험 분석(PRA)	12건	10건	9건
⑤	기 타(검역방법, 검역수량 등 과학적 기준) (PRA)	10건	13건	8건
합 계		113건	142건	117건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수입금지식물에 대하여 수출국이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수입 위험분석(IRA), 상기 표 ③]’에 대하여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도록 수정할 경우에도,

매년 30~40건의 연구분석 결과에 대하여 1개월 내에 국내 피해 전망 등을 포함하여 보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상당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7조³⁾(수입위험분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⁴⁾(수입금지)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의 경우에도 별도의 국회 보고 관련 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3항⁵⁾은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소해면상뇌증’ 발생과 같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3)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7조(수입위험분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물 및 수중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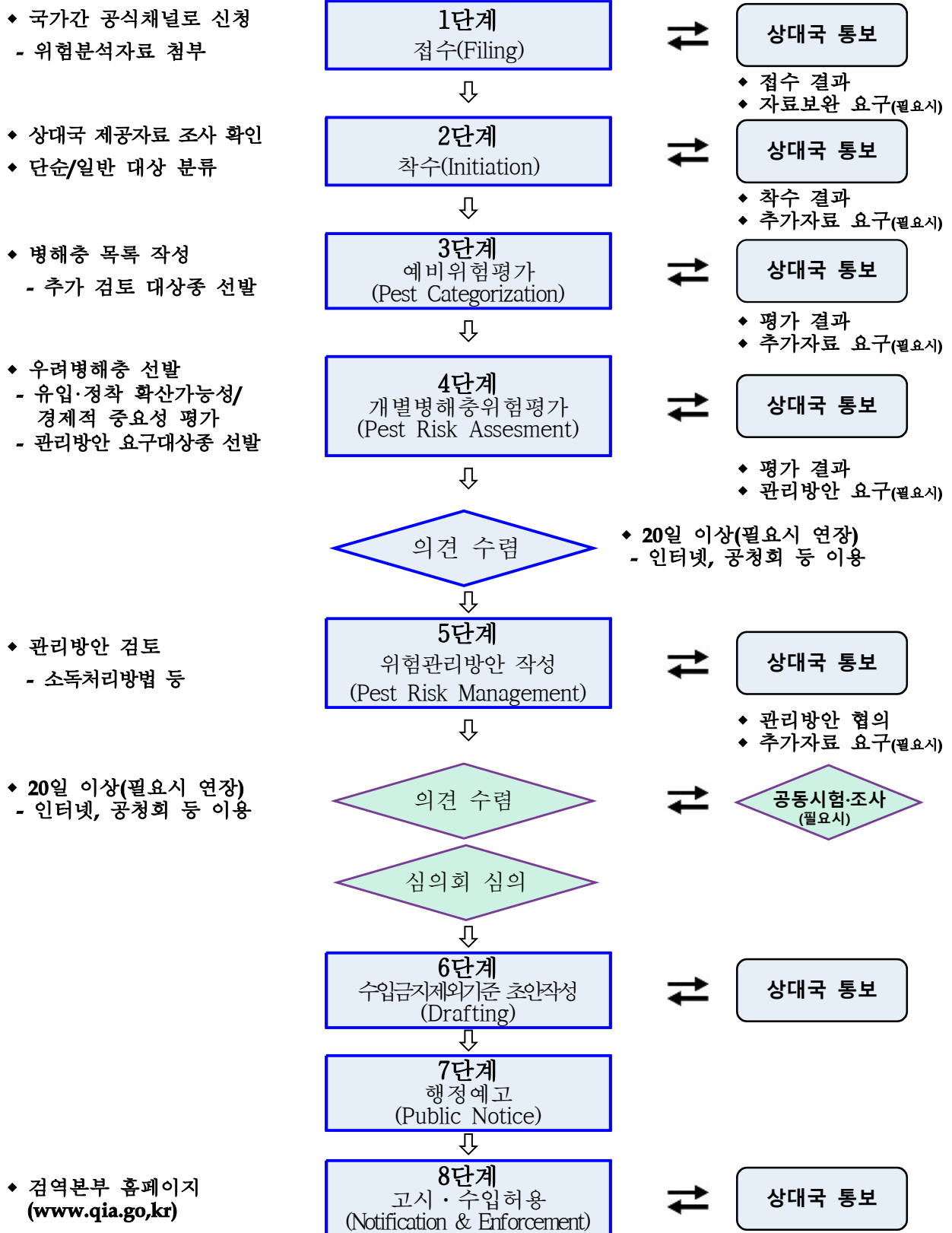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려되는 ‘식물검역’ 관련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식물을 수입하는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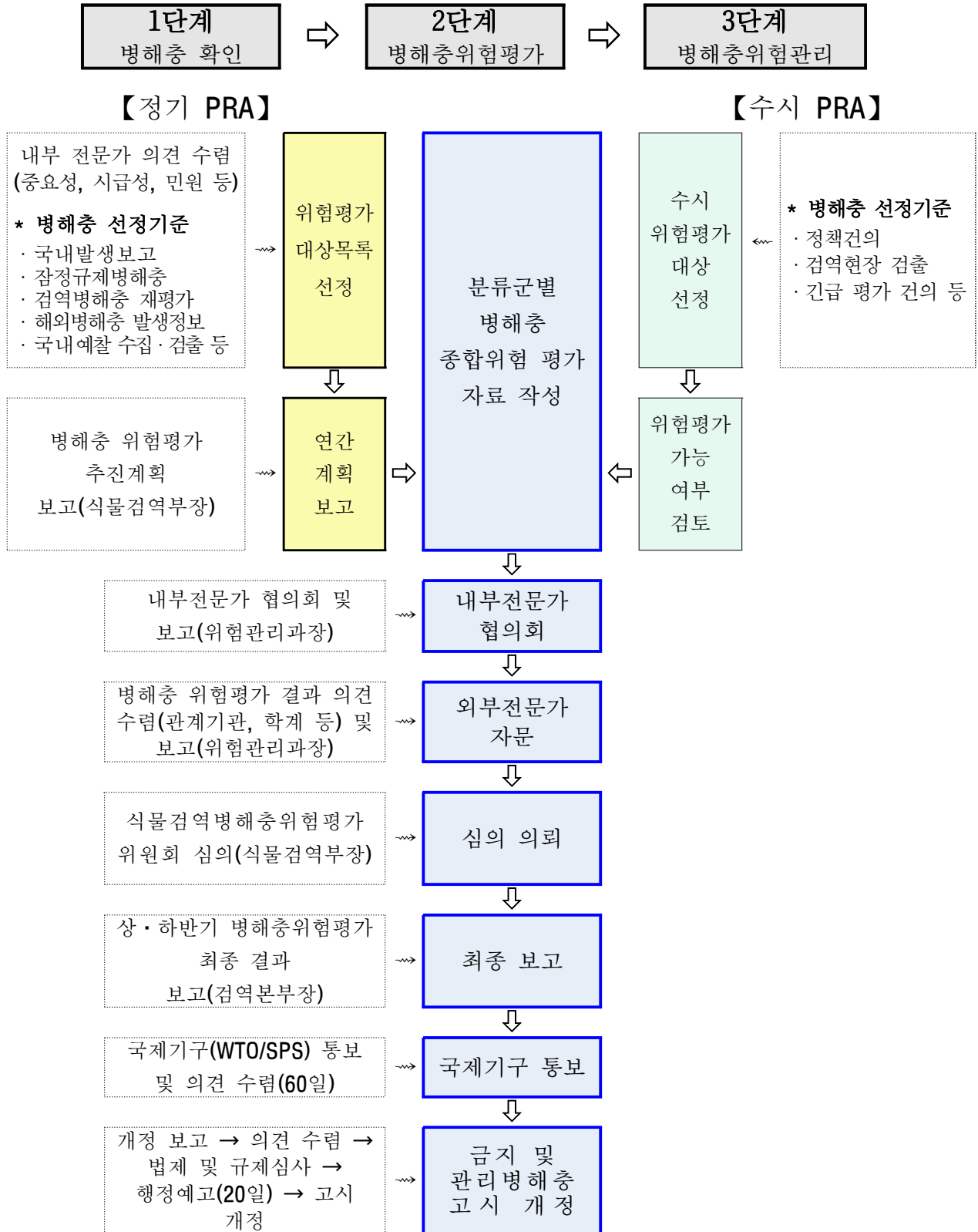
참고 1 수입위험분석(IRA) 절차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참고 2

식물병해충 위험분석(PRA) 절차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참고 3

동물·축산물 수입 위험분석 절차 비교

□ 동·식물 수입위험분석(농식품부) : 8단계

※ 근거법령 : (동물·축산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식물) 식물방역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 위험분석의 실시요령(검역본부 고시)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문 의 처

02)6788-5426